

## 조문별 제·개정이유서

### ◇ 행정규칙명

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

### ◇ 제·개정 이유

특허법 시행규칙 개정 사항(2021. 6.10. 시행) 및 「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」의 소관부서 변경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### ◇ 주요내용

가. (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서식(특허고객번호 부여신청서) 개정) 휴대전화  
가 보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특허고객정보로서 전화번호(집·사무소) 또는 휴대전화번호 중 하나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하고, 우편송달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를 대비하고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선택 사항이던 전자우편주소를 필수로 변경

나. (지침 소관부서) (종전) 정보고객정책과, (변경) 출원과

<이하 여백>